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282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4월 01일 발 의 자 :김광수, 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 노승재, 박기열, 박상구, 박순규, 송명화, 양민규, 이성배, 임종국, 장상기, 전석기, 채유미, 최 선, 추승우, 한기영, 황규복 의원(20 명)

1. 제안이유

○ 청년주택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도시관리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, 이로 인해 주차장·정류장 등 교통시설, 공원·녹지 등 공간시설, 유통업무설비와 같은 유통·공급시설 및 하수도·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무분별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바, 청년주택 촉진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서 그 필요성 및 시급성, 사업의 타당성, 파급효과, 대체 도시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서울특별시의회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○ 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청년주택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역세 권 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,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주 택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질 높은 도시 환 경을 유지・조성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통합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.(안 제 2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중 "관계기관 및"을 "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계기관과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심의대상 등의 사전검토)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위	제22조(심의대상 등의 사전검토)
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관	<u>서</u>
<u>계기관 및</u>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	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 회 및 관계기관과
	,